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정재판부의 구성 변경 및 권한 강화 등 〉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4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정재판부의 구성 변경 및 권한 강화 등	3
2. 관계기관 의견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25인

(2) 제 안 일 : 2026. 3. 10.

(3) 회 부 일 : 2026.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

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
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Ⅲ. 검토의견

1. 지정재판부의 구성 변경 및 권한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현행 재판관 3명에서 재판관 4명으로 변경하고(안 제72조제1항),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에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를 추가하며(안 제72조제2항),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72조제3항), 사전심사기간(30일) 및 심판회부 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안 제7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2조(지정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4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둔다. ②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

현행	개정안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	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는 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때는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지정재판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현행	개정안
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 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지정재판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나.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지정재판부 및 사전심사제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에서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항),

지정재판부는 i)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ii)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iii) 제25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iv)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결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제3항).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4항).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¹⁾를 준용

1) 「헌법재판소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하고,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함
(제5항 및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1991. 11. 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증거조사) ①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해외 입법례 - 독일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6개의 지정재판부(Kammer, 각 재판부에 3개의 지정재판부),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되는 2개의 재판부(Senat), 재판관 16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Plenum)가 있음.

독일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정재판부의 수리절차를 규정하여 수리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에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기본권 관철을 위해 적합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고,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됨(「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제93b조, 제93d 조제3항)³⁾.

한편,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이 기본권 관철을 위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기준이 되는 헌법문제를 이미 재판한 경우로서 헌법소원이 명백히 이유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348호)],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1187~1188면.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a조 ①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수리되어야 한다.

② 헌법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리되어야 한다.

a) 헌법소원에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

b) 제90조 제1항에 열거된 권리를 관철하기에 알맞은 경우. 본안재판의 거절로 소원청구인에 게 특별히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도 전단에 해당할 수 있다.

제93b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93c조의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수리 여부에 관하여 재판한다.

제93d조 ③ 지정재판부는 전원일치의 결정에 의하여 심판한다. 재판부는 3인 이상의 재판관이 심판회부에 동의함으로써 심판회부를 결정한다.

을 인용할 수 있는바(「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c조제1항)⁴⁾, 일부 사건의 본안에 대한 종국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기각결정을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은 지정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 유보됨.

라. 검토의견

앞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지정재판부 및 사전심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의 원칙,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3개의 지정재판부를 항시 구성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 지정재판부제도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여과하는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어 전원재판부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⁵⁾.

특히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중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참고 1. 연도별 심판사건 유형별 접수 건수 및 처리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c조 ① 제93a조 제2항 b목의 요건들이 충족되고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준이 되는 헌법문제를 이미 재판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명백히 이유 있는 경우에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제2항의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 기본법 또는 그 밖의 연방법에 합치, 불합치 또는 무효로 선고하는 재판은 재판부에 유보된다.

5)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1194면.

현황)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법」 개정⁶⁾으로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증가 추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⁷⁾.

이에 개정안은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현행 재판관 3명에서 재판관 4명으로 변경하고,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에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를 추가하며,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 외에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권한을 강화를 통해 헌법소원심판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2.>
-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7) <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단위: 건)

접 수			처 리			심 리 중	
전체	재판소원		계	각하	취하	전원부심리 중	지정부심리 중
3,044	본안	1,233	1,014	1,008	6	10	209
	재심	82	69	69	-	-	13
	계	1,315	1,083	1,077	6	10	222

*26. 6. 30.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첫째, 안 제72조제1항에서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현재 재판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지정재판부의 권한 강화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확대하여 재판부의 심리·판단의 충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사전심사에 관여하는 재판관 증가로 사전심사의 실효성 및 신속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를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대한민국헌법」 제111조⁸⁾ 및 「헌법재판소법」 제3조⁹⁾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소 창립 이래 현재까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개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지속하여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지정재판부 구성이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재판부 심리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정재판부 구성을 4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판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행법상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 내에 사전심사를 마쳐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¹⁰⁾, 사전심사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신속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8)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9)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10) 「헌법재판소법」 제72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72조제2항의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에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은, 동일인의 다수 및 반복 청구가 증가의 헌법재판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¹¹⁾,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가능성, 각하 사유의 불명확성 및 지정재판부의 재량 범위 확대로 인한 자의적 판단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72조제3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원재판부가 보다 중

11) < 각 연도별 동일인이 10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 건수 합계 >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동일인이 100건 이상 청구한 사건 합계(A)	260	821	571	971	1,103
동일인의 수	1	3	2	5	5
연간 전체 사건(B)	1,951	2,626	2,427	2,730	3,241
비율(A÷B×100)	13.3%	31.3%	23.5%	35.6%	34.0%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일인이 100건 이상 청구한 사건 합계(A)	726	916	821	711	809
동일인 수	3	4	4	3	4
연간 전체 사건(B)	2,827	2,829	2,591	2,522	3,092
비율(A÷B×100)	25.7%	32.4%	31.7%	28.2%	26.2%

자료: 헌법재판소

요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정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하여 기각결정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청구인 으로서는 자신의 청구가 배척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약화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투명성과 사법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72조제4항에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30일) 및 해당 기간 내에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로 하여금 각하 결정 외에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사전심사기간 제한 삭제를 통해 적정한 사전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사전심사기간 제한이 지정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을 기회가 지

연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 예외적 연장절차나 최대 심사기간을 두는 등 장기 계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은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나,

① 지정재판부의 구성 변경(안 제72조제1항)에 있어 현재 재판관 3명을 4명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재판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전심사제도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② 지정재판부 각하 사유 추가(안 제72조제2항)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권리남용 유형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구를 “동일인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는 등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청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③ 지정재판부에 기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안 제72조제3항)에 대하여는 전원재판부에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찬성하나, 지정재판부가 아닌 소재판부를 두어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각결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

자는 의견을,

④ 사전심사기간 및 심판회부간주 조항 삭제(안 제72조제4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사전심사 기각 확보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지정 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소재판부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연도별 심판사건 유형별 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사건합계(A)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2,522	3,092
진행중건수 합계(B)	0	0	0	3	14	30	80	187	294	429
결정 건수 합계(C)	1,908	2,598	2,372	2,676	3,163	2,745	2,715	2,367	2,197	2,633
취하건수 합계(D)	43	28	55	51	64	52	34	37	31	30
○ 허가사건										
－접수 건수	20	35	17	31	20	38	43	25	18	20
－진행중 건수	－	－	－	－	1	1	6	8	8	19
－결정 건수	20	35	17	31	18	37	34	14	9	1
－취하 건수	－	－	－	－	1	－	3	3	1	－
○ 헌나사건										
－접수 건수	1	－	－	－	－	1	－	4	9	－
－진행중 건수	－	－	－	－	－	－	－	－	－	－
－결정 건수	1	－	－	－	－	1	－	4	9	－
○ 헌다사건										
－접수 건수	－	－	－	－	－	－	－	－	－	－
－결정 건수	－	－	－	－	－	－	－	－	－	－
○ 헌라사건										
－접수 건수	9	2	2	6	5	2	5	10	9	6
－진행중 건수	－	－	－	－	－	－	－	4	5	1
－결정 건수	7	1	2	6	5	2	5	6	3	2
－취하 건수	2	1	－	－	－	－	－	－	1	3
○ 헌마사건										
－접수 건수	1,379	1,987	1,819	2,062	2,472	2,201	2,322	1,935	1,788	2,445
－진행중 건수	－	－	－	2	7	16	47	81	138	237
－결정 건수	1,350	1,963	1,769	2,014	2,411	2,141	2,250	1,833	1,625	2,184
－취하 건수	29	24	50	46	54	44	25	21	25	24
○ 헌바사건										
－접수 건수	542	602	589	631	744	585	459	617	698	621
－진행중 건수	－	－	－	1	6	13	27	94	143	172
－결정 건수	530	599	584	625	729	564	426	510	551	446
－취하 건수	12	3	5	5	9	8	6	13	4	3